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3473
----------	-------

발의연월일 : 2025. 10. 2.

발 의 자 : 이용우 · 민병덕 · 임미애
김남근 · 이학영 · 박 정
김성희 · 이강일 · 박정현
박홍배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민자치회는 지역사회의 가장 기초적인 단위에서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장임.

2013년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전국 31개 읍·면·동에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가 최초로 이루어진 이후, 지속적으로 시범실시 지역이 확대되어 2023년 기준으로 전국 3,530개 읍·면·동 중 1,531개의 읍·면·동(43.3%)에서 주민자치회를 시범실시하고 있음. 하지만, 10년이 넘도록 주민자치회에 관한 별도의 법률이 제정되지 않아 조례를 근거로 주민자치회가 운영되는 상황임.

이에, 주민자치회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주민자치회의 설치 근거를 「지방자치법」에 규정함으로써 주민자치회가 풀뿌리 민주주의 구현을 위한 주민참여기구로서의 역할을 다하도록 하려는 것임. (안 제

27조의2 신설).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장에 제2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의2(주민자치회) ① 주민은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의 고양을 위하여 읍·면·동별로 주민자치회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주민자치회가 설치되는 경우 관계 법령,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일부를 주민자치회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주민자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주민 화합 및 공동체 형성에 관한 사항
2. 주민참여제도 활성화 등 민주성 제고에 관한 사항
3. 지방자치단체가 위임하거나 위탁하는 사무의 처리에 관한 사항
4.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관계 법령, 조례 또는 규칙에서 위임하거나 위탁한 사항

④ 주민자치회의 대표자와 위원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자치회가 선정한 사람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한다.

⑤ 주민자치회와 그 대표자 및 위원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며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자치회의 운영 및 기능 수행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⑦ 주민자치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치적 목적이나 개인적 이익을 위하여 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⑧ 주민자치회는 기능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주민자치회와 연계하여 주민자치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주민자치회 또는 주민자치협의체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주민자치회가 규약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민자치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0조에 따라 설치 운영 중인 주민자치회는 제27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주민자치회로 본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를 삭제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27조의2(주민자치회) ① 주민은</u> <u>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u> <u>참여의식의 고양을 위하여 읍</u> <u>· 면 · 동별로 주민자치회를 설</u> <u>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u> <u>② 주민자치회가 설치되는 경</u> <u>우 관계 법령, 조례 또는 규칙</u> <u>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u> <u>치단체 사무의 일부를 주민자</u> <u>치회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u> <u>있다.</u> <u>③ 주민자치회는 다음 각 호의</u> <u>기능을 수행한다.</u> <u>1. 주민 화합 및 공동체 형성에</u> <u>관한 사항</u> <u>2. 주민참여제도 활성화 등 민</u> <u>주성 제고에 관한 사항</u> <u>3. 지방자치단체가 위임하거나</u> <u>위탁하는 사무의 처리에 관한</u> <u>사항</u> <u>4.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u> <u>에 관한 사항</u> <u>5. 그 밖에 관계 법령, 조례 또</u>

는 규칙에서 위임하거나 위탁한 사항

④ 주민자치회의 대표자와 위원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자치회가 선정한 사람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한다.

⑤ 주민자치회와 그 대표자 및 위원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며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자치회의 운영 및 기능 수행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⑦ 주민자치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치적 목적이나 개인적 이익을 위하여 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⑧ 주민자치회는 기능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주민자치회와 연계하여 주민자치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주민자치회 또는 주민자치협의체의 설치

	<u>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u> <u>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u> <u>정하는 범위에서 주민자치회가</u> <u>규약으로 정한다.</u>
--	--